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40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황 희·추미애·김병주

허 영・박지원・정성호

김준형 • 이건태 • 주철현

조승래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 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취업"을 "취업 및 창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군인으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① --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취업 및 창업-----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 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ᅟ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 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 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 설>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 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신 설>

<신 설>

<u>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u> 따라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 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

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교·준사관 또는 부

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

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